2025년 수소산업 부품기술개발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창원시 수소 전주기 기업의 역량과 성장 잠재력 확보를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2025년 수소산업 부품기술개발 지원사업」의 모집공고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관내 수소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2025년 3월 5일 창원산업진흥원장

I 사업개요

- □ 사 업 명 : 2025년 수소산업 부품기술개발 지원사업
- □ 사업목적
 - 수소 관련 기업의 기술사업화 및 판로개척을 통한 시장 경쟁력 강화
 - 기 수소 관련 사업 영위기업의 성장가속화 및 수소 예비기업의 사업화 제고
- □ 모집기간 : 2025. 3. 5.(수) ~ 3. 26.(수)
- □ 지워대상 : 2분야
 - 1) 현재 수소 생산 소재/부품/장치 전후방 산업 영위기업
 - 2) 수소사업 희망 기업(예비 및 초기 스타트업 기업)
 - ※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창원지역에 본사 또는 공장(연구소) 보유기업
 - 지원사업을 통해 당해 연도 고용 창출 및 매출액 증대가 예상되는 기업
 - 수소산업 고부가가치 산업 전환을 위해 아이템을 선정 중인 기업
 - 수소산업 관련 기자재의 시험인증평가가 필요한 기업
 - 기자재 국산화를 위한 설계·제작 기술지원이 필요한 기업
 - 개발기술 분석 및 기술경쟁 전략이 필요한 기업

Ⅱ 모집내용

□ 모집규모 : 3개사 내외(2분야)

1) 영위기업 : 기업당 최대 40,000천원 이내

2) 스타트업 기업: 기업당 최대 25,000천원 이내

□ **지원금액** : 모집 분야당 최대 40,000 / 25,000천원 이내 차등지급

<사업비 매칭 예시>

- 사업비 = 지원금액 + **기업부담금액*(지원금액의 30% 이상)** 예시) 사업비 52,000천원 = 지원금액 40,000천원 + 기업부담 12,000천원

- 유의 사항
- 지원 규모는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평가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원함

□ 지워자격

· 필수조건 : 접수마감일 기준 ① ~ ④의 지원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 내 본사 또는 주사업장(연구소) 소재 중소기업 기업은 「중소기업 기본법」제 2조에 의한 중소기업 기본법」제 2조에 의한 중소기업 기적 기업 및 전·후방 연관 업종 기업 기업 : 2024년도 매출액 30억 원 이상 대한 기업 중 아래에 한가지 해당 기업 약 7년 이내 예비 및 초기 스타트업 기업소 관련 정부 과제 수행실적 보유 |
|---|
| 업: 2024년도 매출액 30억 원 이상 E업: 2024년도 매출액 30억 미만 기업 중 아래에 한가지 해당 기업 업 후 7년 이내 예비 및 초기 스타트업 기업 소 관련 정부 과제 수행실적 보유 |
| E업: 2024년도 매출액 30억 미만 기업 중 아래에 한가지 해당 기업업 후 7년 이내 예비 및 초기 스타트업 기업소 관련 정부 과제 수행실적 보유 |
| |
| 는이행(기업의 부도, 국세·지방세 등의 체납처분, 금융기관 등의 채무성자 등) 희생절차의 개시 신청(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업자금을 지원받은 법인기업은 예외로 함) 사본 전액 잠식 징후가 있거나 스타트업 육성 취지에 부적합한 경우 기업 지원사업 참여 제한 기업(대표자 포함) 업, 글로벌 강소기업, 히든챔피언 선정기업 |
| |

□ 지원내용

- ·기술 실현화, 시장 개척 등 수소산업 부품 개발 지원
- ·상용화 목적의 기업 시제품 제작 및 Mock-up 제작비 등
- ·국내외 인증 획득에 소요되는 시험분석 및 인증평가 지원
- 수소산업 분야 기술 및 서비스 시장 진출을 위한 기획 지원 등

□ 지원분야

| 지원항목 | 내 용 | 지원금액 |
|-------------------|--|-------------------------------------|
| 시제품 제작 | - 원천기술 확보 및 상용화 목적의 기업 시제품(test sample) 제작 · 재료비, 제품 가공비, 금형 제작비 · 제품 성능 및 내구 확인을 위한 성능평가 지원 · 제품의 치수, 신뢰성 평가 지원 | |
| 시험분석 및 인증지원 | - 시험분석 및 인증평가 지원 · 국내외 인증 획득에 소요되는 인증비, 시험비, 대행비 · 한국가스안전공사 시험인증 지원 · 공인시험기관(KTR, KCL, KTL, KOTITI 등) 인증 지원 ※ 단, 사업 기간 내 결과가 도출되어야 하며 그러지 못한 경우는 사업비 집행이 불가능하며, 집행되었을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 | [영위기업] 기업당 최대 4천만원 이내 / |
| 연구장비 활용 | - 국가연구시설 및 지역 연구 장비 등 이용 지원 | [스타트업] 기업당 최대 |
| 공정개선 | - 기업의 생산제조 공정에 관한 개선지원 · 공정설계비, 공정설비 개선을 위한 재료비 등 | 2.5천만원 이내 |
| 특허지원 | - 수소 관련분야 기술 및 서비스에 대한 국내외 특허 등 조사/분석, 출원 및 등록 지원 | |
| 상품기획 | - 수소산업분야 기술 및 서비스 시장 진출을 위한 신규상품 기획 지원 | |

- ※ 지원프로그램 간 교차 지원 가능(예. 시제품제작 4천만원 지원, 시험인증평가 1천만원 지원)
- ※ 인건비, 장비구매비 등 사업 종료 후 기업의 자산으로 남는 항목은 지원금으로 지출 불가

Ⅲ 지원절차 및 일정

□ 추진절차

| □ 十位恒小 | | |
|---|---|-------------------|
| 단 계 | 내 용 | 일 정 |
| | | |
| 모집공고/접수 (신청기업 → 진흥원) | · 창원산업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한 지원기업 모집 ▼ | 3월 |
| | | |
| 서류 검토 (진흥원) | · 신청기업 제출서류에 대한 유사·중복성 검토 · 내부 및 외부 지원 기관 대상 | 4월 |
| | ▼ | |
| 선정평가/결과통보 (선정평가 위원회) | · 신청기업 선정평가 · 수혜기업 선정, 사업비(지원금 확정), 선정결과 통보 | 4월 |
| | ▼ | |
| 협약 체결 (진흥원 ↔ 수혜기업) | · 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 협약 체결 | 4월 |
| | ▼ | |
| 사업수행 | · 사업계획서에 따른 사업수행 | ~ 10월 |
| | ▼ | |
| 중간 점검 (진흥원 → 수혜기업) | · 진행 상황 및 진도 점검 · 지원프로그램 추진 애로사항 등 청취 | 6 ~ 8월 |
| | ▼ | |
| 완료/결과보고 (수혜기업 → 진흥원) | · 사업수행 완료 및 결과보고서 제출 | 협약 종료 이후 3주 이내 |
| | ▼ | |
| 결과평가/결과통보 (결과평가 위원회) | · 지원사업 결과보고서 서면평가 | 11월 말 |
| | ▼ | |
| 기업지원금 지급 (진흥원 → 수혜기업) | · 결과평가 결과에 따른 기업지원금 지급 | 11~12월 |
| | ▼ | |
| 만족도 조사 (수혜기업 → 진흥원) | · 수혜기업 대상 만족도 조사 | 12월 |
| (결과평가 위원회) 기업지원금 지급 (진흥원 → 수혜기업) 만족도 조사 | ▼ · 결과평가 결과에 따른 기업지원금 지급 ▼ | 11~12월 |

※ 관련기준 : 창원산업진홍원 기업지원사업 관리지침에 따름

- 제3장 지원사업계획 수립 및 공고·신청, 제4장 선정평가 및 선정평가위원회, 제5장 협약 및 사업수행

※ 사업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Ⅳ 선정평가

- 선정평가 절차 (창원산업진흥원 기업지원사업 관리지침 제4장 선정평가 및 선정평가위원회에 따름)
 - (사전검토) 제출서류 검토 및 미제출서류 보완요청 등 창원산업진흥원 내부 자체 사전점검 및 요건심사
 - (발표평가) 신청기업의 기업 현황, 사업계획, 기술경쟁력, 사업화 가능성 등을 제출 한 사업신청서를 바탕으로 발표 및 질의응답

□ 선정평가 주요항목

○ 영위기업

| 구 분 | | 배점 | 평 가 항 목 |
|------------------|-------------------------|----|--|
| 정량 | 기술개발 능력 (30) | 15 | ◇ 기술개발 현황 : 매출액 대비 R&D 투자 비중 (지난 3년간) |
| | | 15 | ◇ 기업의 수행역량 : R&D 인력(직원수)과 전문성(기술개발실적) |
| | 사업내용 및 기술경쟁력 (20) | 20 | ◇ 타 기술대비, 해당 개발기술의 우수성/희소성◇ 타 사 대비 기술경쟁력 등◇ 공정개선 필요성 및 적정성 |
| 정성 및 기대효 (40) | 개발제품의 성과 | 20 | ◇ 사업화 계획(사업계획서)의 우수성 및 독창성◇ 장비개선 및 프로세서 재설계 우수성 및 독창성 |
| | | 20 | ◇ 사업화 후 예상되는 파급효과 (매출액 증가, 고용창출, 특허기술 등)◇ 공정개선 불량률 감소, 생산량 증가율 등 |
| | | 5 | ◇ 추진일정 및 사업비의 적정성 |
| | | 5 | ◇ 부품산업 전문육성사업과의 부합성 |

O 스타트업 기업

| | 구 분 | 배점 | 평 가 항 목 |
|----|----------------------------|----|---|
| 정량 | 기술개발 능력 (10) | 5 | ◇ 정부 과제 참여 현황 : 수소 관련 정부 과제 수행실적 (2건 이상) |
| | | 5 | ◇ 기업의 수행역량 : R&D 인력(직원수) |
| | 사업내용 및 기술경쟁력 (50) | 20 | ◇ 해당 개발 기술의 우수성과 차별성 |
| | | 20 | ◇ 타 사 대비 기술경쟁력 등 |
| | | 10 | ◇ 예상 시장수요조사 결과를 통한 제품 검증(관련시장의 필요성) |
| | | 20 | ◇ 사업화 계획(사업계획서)의 우수성 및 독창성 |
| 정성 | 개발제품의 성과 및 기대효과 (40) | 20 | ◇ 사업화 후 예상되는 기대효과 (경제적, 기술적 효과)・매출, 수출, 고용 등・설계, 문제해결 가능성 등 |
| | 사업목적 | | ◇ 추진일정 및 사업비의 적정성 |
| | 부합성 (10) | 5 | ◇ 부품산업 전문육성사업과의 부합성 |

Ⅴ 신청방법

- □ 신청기간 : 2025. 3. 5.(수) ~ 3. 26.(수)
- □ 신청방법 :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온라인 제출(업로드)
 - 창원산업진흥원 홈페이지(www.cwip.or.kr) 공고문 참고
 - 기업 회원가입 및 사업신청 온라인 접수

□ 제출서류

| 구 분 | 제출서류 | 서식 |
|------|--|---------|
| | 사업신청서(40장 이내), 참고자료 별첨 가능 | 붙임 1 |
| | 사업자등록증 | |
| | 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 |
|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
| 필수제출 | 참여의사 확인서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 붙임 2 |
| | 2022년, 2023년 재무제표, 2024년 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표준증명원 | 보유서류 제출 |
| | 최근 3년간 연구개발비 투자확인서 | 붙임 3 |
| | 참여제한 사전검토 확인서 | 붙임 4 |
| | 세미나 수요조사서 | 붙임 5 |
| | 회사소개서, 홍보물(카탈로그) | |
| | 기업신용평가서 | |
| 선택제출 | 기술 인증, 인정서, 수상 증빙 등 | |
| | 특허(등록), 실용실안,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 |
| | 정부·지자체 R&D/비R&D 수행실적 등 | |

- ※ 증빙 제출서류만 선정평가 점수에 반영, 증빙 미제출 시 불인정
- 신청서식 : 사업신청서 등 서식은 아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 서류제출 및 첨부서류 양식다운
 - 창원산업진흥원 www.cwip.or.kr → 지원사업안내 → 원자력수소팀팀
- (붙임 1) 사업신청서 작성요령
 - (형식) 휴먼명조 / 12포인트 / 줄 간격 160%으로 작성
 - (내용) 사업신청서 본문의 II.사업개요 및 내용에서 사업수행 계획 및 내용과 사업 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

Ⅵ 유의사항

- 제출서류 양식을 준수하여 상세히 작성 후 제출 요망
- 붙임 4. 참여제한 사전검토 확인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기업
 - 기업의 부도, 법정관리 중인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4대 보험을 체납 중인 기업
 - 사업 참여제한 제재조치를 받은 기업으로 그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또는 기업. 다만, 회생인가 받은 자 또는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 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제외한다.
 -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기업
 - 금품 등 기업비위로 인하여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 인 기업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과제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기업
 - 성과조사기간 내 수혜기업의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기업
- 향후 위 사항에 대한 적발시 창원산업진흥원 기업지원사업 관리지침에 따라 제재조치 될수 있음

붙임 1. 사업신청서 1부

- 2.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
- 3. 연구개발비 투자확인서 1부
- 4. 참여제한 사전검토 확인서 1부
- 5. 세미나 수요조사서 1부. 끝.